

의안번호	제 805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1년 8월 25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05
----------	-----

제출연월일 : 2021년 8월 25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수수료 납부의 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원인 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토록 함.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제4항에 의한 수수료는 충청북도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수입증지요금계기(자동인증기)를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조

현 행	개 정
<p>제11조(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승인)</p> <p>①~④ 생략</p> <p>⑤ 제4항에 의한 수수료는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납부 하여야 한다.</p>	<p>제11조(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승인)</p> <p>①~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4항에 의한 수수료는 충청북도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수입증지요금계기(자동인증기)를 사용할 수 있다.</p>

관련법령 발취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27>

1.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제31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허가·검사 또는 교육 등을 받고자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저장·취급의 승인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
3.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탱크안전성능검사
4.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6.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
7.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8.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9.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운반용기의 검사
10.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별표 25와 같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별표 25]

수수료 및 교육비(제79조제1항관련)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시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 2만원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 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조소등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금액